#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553호

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취업본부), 02-970-9002

개정 1989. 10. 29. 개정 1993. 3. 2. 개정 1995. 3. 2.

제정 1984. 4. 4.

개정 1999. 3. 2.

개정 2001. 9. 3.

개정 2003 7 15

개정 2004. 6.10.

개정 2008. 11. 20.

개정 2010. 8.30.

개정 2014. 7. 18.

개정 2016. 1.20.

개정 2019. 7.22.

개정 2020. 8.1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 정2014.7.18>

제2조(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학점)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대학 또는 학부

(과)는 소속학생이 전일제(1일 6시간 이상)로 4주 연속 이상 사업체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2014.7.18×개정2019.7.2

### ② 삭제

③ 현장실습의 학점단위는 학칙에 따라 자율학습형 실험실습으로 분류하여 1학점당 45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장기현장실습은 장기현장실습(Co-op)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다.<개정2019.7.22.>

# ④ 삭제

제3조 〈삭제 2014.7.18〉

제4조(교육과정 개설) ①현장실습은 학부(과) 혹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서에 서 개설할 수 있다.<개정2014.7.18>

② 현장실습 교과목은 3,4학년도(5년제의 경우 3,4,5학년도) 교육과정에 전 공필수나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. 〈개정2014.7.18〉

제5조(현장실습 시기 및 신청자격) ① 현장실습의 시기는 1, 2학기 또는 방학 기가 중에 실시할 수 있다.<개정2014.7.18×개정2019.7.22.>

# ② 삭제

- ③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(복학예정자 포함)이 신청할 수 있다.〈신설20 19.7.22.〉
- ④ 계절학기 현장학습의 경우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재학생

- 을 대상으로 한다.<신설2019.7.22.>
- 제6조(현장실습 사업체 및 기관의 선정) ① 각 대학장 ,학부(과)장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현장실습에 적합한 사업체 및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<개 정2014.7.18.×개정2019.7.22.×개정2020.8.14.>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학생의 전 공분야,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〈삭제 2014.7.18〉
- 제7조(현장실습 사업체 및 기관의 선정기준) 현장실습 사업체 및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2014.7.18×개정2019.7.22.>
- 1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체<개 정2014.7.18×개정2019.7.22.>
- 2.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<개정2014.7.18>
- 3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 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<개정2014.7.18>
- 4. 그밖의 근로자의 인적구성과 시설·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 시하기에 적합하다고 각 대학장, 학부(과)장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인 정하는 사업체<개정2014.7.18×개정2019.7.22.×개정2020.8.14.>
- 제8조(현장실습 협약의 체결) ①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현장실습 시행 사업 체 또는 기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<개정2014.7. 18×개정2016.1.20×개정2019.7.22.×개정2020.8.14.>
  - ② 소속 학부(과)장은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하여 현장실습실시자 명단을 작

- 성하여 해당 대학장을 거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〈개정2014.7.18〉 제9조(실습 사업체 및 기관과 실습시기 변경) 실습실시 이전에 사업체 및 기관사정 또는 학생의 질병, 출장 등의 사유로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체 및
- 제10조(현장실습 철회)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학생은 실습개시일 12일 이내에 실습철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9.7.22.>

기관과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〈개정2014.7.18〉

- 제11조(현장실습지도) 현장실습지원센터장, 지도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학생의 실습기간 중에 현장실습 사업체및 기관에서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  정2014.7.18×개정2016.1.20×개정2019.7.22.×개정2020.8.14.>
- 제12조(현장실습 종료 및 평가 자료 제출) ①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습기간 중 작성한 현장실습 기(관)업 평가서, 현장실습일지, 최종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9.7.22.>
- ② 지도교수는 평가 자료를 기초로 제13조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성적을 평가한다.<2019.7.22.>
- 제13조(평가방법 및 평가기준) 현장실습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① 현장실습 평가방법 및 기준
- 1. 현장실습 평가는 실습기관의 지도책임자가 현장실습 확인서상에 있는 실습 평점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.<개정2014.7.18>
- 2. 현장실습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(항목별 5점만점 × 7항목)
- \* 준법성 \* 대인관계 \* 학습능력 \* 작업태도 및 열의

- \* 신뢰성 \* 현장작업수준 \* 작업전공수준
- 3. 항목별 평가 표시 방법 : 해당란에 "V"로 표시
- 4. 최종 평점 평가는 현장실습 확인서, 실습일지, 보고서를 종합하여 지도 교수가 개인별로 평가한다.
- 5. 종합평가 기준 (합계: 100%)<2019.7.22.>

가. 현장실습 기(관)업 평가서 35%

나. 현장실습 일지

15%

다. 최종 보고서

50%

## ② 현장실습 평점구분

등 급	배 점	평 점
A+	100 - 95	4.5
$A^{\dagger}$		
	94 - 90	4.0
B+	89 - 85	3.5
B°	84 - 80	3.0
C+	79 - 75	2.5
C°	74 - 70	2.0
D+	69 - 65	1.5
D°	64 - 60	1.0
F	59점 이하	0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 진법,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, 교육부령 제583호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.

#### 부칙

이 세칙은 198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198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세칙에 의거 시행된 현장실습 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칙

이 세칙은 1993년 3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이 세칙은 1995년 3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제2조의 적용 시기는 2000년 제1학기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세칙 폐지) 이 규정 개정으로 서울산업대학교산업체현장실습시행 세칙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4조의 적용 시기는 2004학년 제1학기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008.11.2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(제631호, 2010.8.30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

## 부칙(제253호, 2014.7.1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(제309호, 2016.1.2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(2019.7.22.)

이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(제553호, 2020.8.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삭제 2014.7.18> 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4.7.18.×개정 2016.1.20.×개정 2019. 7. 22.×개정 2020.8.14.>

# 현장실습 협약서

- 제1조(목적) 이 현장실습 협약서는 ○○○회사 대표·기관장, 현장실습생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호간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현장실습기간 및 장소) 현장실습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(일)로 하며 장소는 현장실습 파견요청서에 의하되 변경함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혐의한다.
- 제3조(사업주의 의무) ① 현장실습운영회사기관장(이하 "갑"이라 한다)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생(이하 "을"이라 한다)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설, 공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"을"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② "갑은"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성희롱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·위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·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현장실습생의 의무) "을"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현장실습과제(업무)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.
- 2.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
- 3.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사용한다.
- 4.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"갑"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(기준시간) ① 현장실습 기준시간은 1학점당 4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② 현장실습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.
- 제6조(실습지원비) "갑"은 "을"에게 숙박비, 교통비, 실습보조금 등의 실습지원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할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(이하 "병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지급한다.
- 제7조(현장실습의 평가) "갑"은 "병"이 정한 기준에 따라 "을"의 현장실

습 및 출근상황과 실습기관평가서를 실습 종료 즉시 "병"에게 통보한다. 제8조(보험가입 등) ① "병"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와 별도로 "갑"은 "갑"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.

- 제9조(현장실습 협약의 해지) "갑"과 "을"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와 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 산정은 "갑"의 내규에 따른다.
- 제10조(실습생의 권리 등) "을"은 실습계획에 의한 지도와 보호 및 재해보 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휴게시간,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과 "갑"이 정한 취업규칙을 따른다.
- 제11조(그 밖의 사항) ①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- ②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"갑", "을", "병"이 기명날인한 후 갑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 년 월 일

<b>갑(기업·기관)</b> 기관명:	사업자등록번호:	인
주 소:	부서장:	Ū.

을(학 생)	서울과학기술대학교	OOOO대학 OOOO학(부)과	인
	학번 :	성명: :	긴

병(대학교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성명 : 인